

제27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

2020년 미래경제국 소관
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4. 23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2020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(미래경제국)

검 토 보 고 서

2020년 4월 23일
전문위원 정우속

I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
II. 안건명 : 2020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
(미래경제국)

III. 제출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

※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: 53억 2,780만 3천원

○ 추가경정예산의 규모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증감률(%)
합 계	1,069,921,237	1,064,593,434	5,327,803	0.50
일반회계	1,049,796,174	1,044,468,371	5,327,803	0.51
특별회계	20,125,063	20,125,063	0	0.00
의료급여기금	1,890,194	1,890,194	0	0.00
주 차 장	18,234,869	18,234,869	0	0.00

IV.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1. 일반회계 세입

○ 세입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율(%)
총 계	27,795,030	27,462,530	332,500	1.21
지역경제과	5,361,677	5,029,177	332,500	6.61
일자리정책과	4,127,125	4,127,125	0	0.00
스마트도시과	24,100	24,100	0	0.00
정보통신과	0	0	0	0.00
녹색환경과	718,824	718,824	0	0.00
자원순환과	17,563,304	17,563,304	0	0.00

- 일반회계 세입은 277억 9,503만원으로,

기정예산 274억 6,253만원 대비

3억 3,250만원(1.21%)이 증가함

- 주요 증가사유

- 지역경제과 상품권 할인 보전금 시비 보조금, 상품권 운영 수수료 시비보조금을 편성함

2. 일반회계 세출

○ 부서별 세출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율(%)
합 계	86,294,870	83,613,770	2,681,100	3.21
지역경제과	9,535,473	6,857,973	2,677,500	39.04
일자리정책과	6,370,449	6,370,449	0	0.00
스마트도시과	2,542,614	2,542,614	0	0.00
정보통신과	5,472,873	5,472,873	0	0.00
녹색환경과	1,441,277	1,437,677	3,600	0.25
자원순환과	60,932,184	60,932,184	0	0.00

- 일반회계 세출은 862억 9,487만원으로,

기정예산 836억 1,377만원 대비

26억 8,110만원(3.21%) 증가함

- 주요 증가사유

- 지역경제과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사업 확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, 서울강서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,
- 녹색환경과 코로나 19대응 화훼농가 살리기 지역경제 지원대책으로 환경정화 식물 배치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를 편성함

○ 사업별 세출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사업명	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		3,102,565	421,465	2,681,100
자체사업	소계		2,447,946	244,346	2,203,600
	지역경제과	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	2,200,000	0	2,200,000
	녹색환경과	청사관리	247,946	244,346	3,600
국시비 보조사업	소계		654,619	177,119	477,500
	지역경제과	전통시장 활성화	211,119	177,119	34,000
		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	443,500	0	443,500

- 자체사업은

-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2억원 증액,
녹색환경과 청사관리 360만원 증액으로
기정예산 2억 4,434만 6천원 대비 22억 360만원 증액하였음

- 국시비 보조사업은

-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3,400만원 증액,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
4억 4,350만원 증액으로
기정예산 1억 7,711만 9천원 대비 4억 7,750만원 증액하였음

V. 종합의견

-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,
-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, 전통시장 활성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,
- 적극적인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, 코로나19를 대응하여 긴급히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